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02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5.경부터 [redacted]시 B건물 C 내지 D호에서 'E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원고는 2016. 12. 29. [redacted]시 F 대 541m²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G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10.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17억 1,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H과 사이에 건물의 인도 및 유치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급(다만, 그 중 5,000만 원은 유체동산 반출완료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H이 지정한 I에게 6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은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져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법보좌관이 대금지급기한 지정결정을 한 이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redacted]지방법원 2017가합570154호), 위 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redacted]법원 2018나2038896호)와 상고(대법원 2019다25212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 원고는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redacted]법원 2018가합58164호), 위 법원은 2020. 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의 불복

1) 강릉세무서장은 2019. 8. 22.부터 2019.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47,315,41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8.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릉세무서장은 2019. 10. 30.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한편,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지 않는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2,358,341원(가산세 포함)이 되는데, 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와 부과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다. 원고는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고, 당시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었기에 그 이행을 위하여 유치권자 H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갑 13,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까지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병원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법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8호를 나열하고 있다.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가목), 관리비와 유지비(나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다목),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제7호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제7호 각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8호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7호의 각 목에서 정한 비용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금이 제2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결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병원 사업에 공여되지도 않아서 총수입금액 발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추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양도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데(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두59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한 셈이 되고, 따라서 채권자(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 변제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법률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J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④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삭제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